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2025. 10.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5-120
- 나. 제출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5년 10월 13일(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5년 10월 14일(화)

2. 제출사유

스마트팜 조성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스마트팜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나.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다. 스마트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규정 신설(안 제18조)
- 라. 장 제목 정비(안 제2장, 제4장)
- 마. 해당 조례 정의된 용어로 조항명 정비(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5. 9. 4.~9. 24.(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결과]

관계 법령	-
개선 의견	‘보조금의 신청·교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보조금의 신청·교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수정 반영 권고
새마포담당관 의견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팜을 정의하고, 스마트팜 조성 근거 마련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기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5. 검토보고

가. 개정 목적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의 목적은 스마트팜 조성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도시농업의 스마트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 2024년 7월 26일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 서울시는 농업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ICT 기반 실내형·교육형 도시농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동구·은평구·노원구 등 다수 자치구가 이미 스마트팜 교육장 및 체험형 도시농업시설을 운영 중임.
- 마포구 또한 2023년부터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스마트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보완 입법조치로서 의미가 있음.
- 특히 스마트팜은 첨단 환경제어 및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로서, 효율적 운영관리 및 장기적 유지체계 확보를 위해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

나. 주요 내용

(1) 스마트팜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 도시농업이 기존 텃밭 중심에서 ICT 융복합형 교육·체험 모델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스마트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u></p>

(2) 스마트팜 조성·운영 근거 신설(안 제14조)

- 구청장이 유희부지·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 스마트팜 시설에서 작물재배, 교육·체험, 복지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 가능함.
- 또한,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보조금 관련 문언을 ‘준용’에서 ‘따른다’로 변경하여 명확성을 확보함.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제14조(스마트팜의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유휴부지, 유휴공간 및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유휴부지, 유휴공간 등에 대하여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의 스마트팜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작물재배실 및 체험장에서의 작물 재배</u> <u>2.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u> <u>3. 스마트팜 시설에서 생산한 재배 작물을 복지사업 등에 활용</u> <u>4. 그 밖에 스마트팜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p><u>③ 구청장은 스마트팜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u>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3) 보조금의 지원 확대(안 제18조)

- 스마트팜 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도시농업 박람회 등 행사 개최를 보조금 지원대상에 추가함.
- 보조금의 신청·교부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절차적 명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함.

현 행	개 정 안
<p><u>제17조</u>(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신설></p> <p>5. (생략)</p> <p><신설></p>	<p><u>제18조</u>(보조금의 지원) ① -----</p> <p>-----</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스마트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u></p> <p>6. <u>도시농업 박람회 등 도시농업 관련 행사 개최</u></p> <p>7.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u>보조금의 신청·교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u></p>

(4) 체계 및 용어 정비

- 조례 내 장(章) 제목 및 조항명을 정의된 용어에 맞게 조정하여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함(예: 제2장, 제4장, 제12조 등).
- 보칙에 포함되어 있던 중복·중의적 조항(준용·시행규칙 등)을 삭제하고, 개정 구조에 맞게 정비함.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u>마포구 도시농업</u>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장 <u>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지원</u></p> <p>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략)</p> <p>2. <u>마포구</u> 소속 4급 <u>내지</u> 5급 공무원 3명 이내</p> <p>3. ~ 5. (생략)</p>	<p>제3조(기본원칙) ① ----- ----- -----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농업</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장 <u>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u></p> <p>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구</u> ----- <u>또는</u> ----- -----</p> <p>3. ~ 5. (현행과 같음)</p>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며, 도시농업의 첨단화 및 교육·체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스마트팜은 첨단 환경제어 및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로서, 초기 단계에서의 온·습도 제어, 전력 부하 관리, 결로 방지 등 기술적 안정화 절차가 필수적임
- 이러한 안정화 과정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므로, 본격적인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시범운영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데이터 보정,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결로 예방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스마트팜은 초기 구축비보다 상시 운영비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를 가지므로, 에너지 효율화, 인력운영의 최적화, 시설 통합관리 등 운영비 절감 대책을 병행해야 함.
- 특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집행부는 연간 약 1억 8천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면서,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① 자체 관리인력 양성, ②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협의, ③ 모종 구매 최소화 및 육묘 중심 운영체계 구축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절감방안이 실제 운영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운영비 부담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재정 효율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운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앞쪽)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스마트팜에서의 작물 재배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비 소요
제14조(스마트팜의 조성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스마트팜 개소 수 및 운영방식에 따라 비용 변동 가능

스마트팜 상주, 관리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스마트팜 전기, 수도 등 공공
운영비, 모종, 씨앗, 양액 등 작물재배관련 비용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구비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						
	소계(b)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 총 비용(a-b)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합계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5. 덧붙이는 의견 : 스마트팜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속에서 미래 농업으로 다음세대 어린이, 청소년 등 구민들에게 스마트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으며, 스마트팜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①자체관리인력 양성, ②농업용전기 협의 ③모종보다 육묘 재배 원칙으로 운영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편성목	통계목	내역	예산액(천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등	67,987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교육체험프로그램 용역비 ◦ 홍보물 및 교육운영관련 소모품 등	34,000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수도, 전기 통신 등) ※ 농업용 전기 적용 기준	42,000
	행사운영비	◦ 스마트팜 홍보 행사	5,000
재료비	재료비	◦ 배양액 및 종자, 모종 등 구입비	15,000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스마트팜시설 유지·보수비	12,000
합 계			175,987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윤선영
연락처	02-3153-8592

붙임 2

마포구 스마트 농업 활성화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스마트농업시설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교육·체험의 기회 제공 및 수확물 기부 등
- 시설별 현황

연번	시설명(가칭)	면적 (㎡)	사업비 (천원)	내 용
1	망원1-2주차장 지상부 스마트팜 교육 체험관	240.84	42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망원1-2공영주차장 지상부 폐쇄 공원 內 • 형태: 1개층, 경량철골구조 가설건축물 1동, 온실 1동(폴리카보네이트) • 시설: 수직농장(식물공장) 및 스마트온실, 체험장 • 작물: 엽채류, 과채류 • 운영: 2025. 11.말~ 시범운영 평일, 10~17시 자유관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	한서주차장 옥상 스마트팜 교육 체험관	280 이내	4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한서공영주차장 옥상 • 형태: 1개층, 경량철골구조 가설건축물 1동, 온실 1동(폴리카보네이트) 예정 • 시설: 수직농장(식물공장) 및 스마트온실, 체험장 • 작물: 엽채류, 과채류 • 운영: 2026. 상반기 중~ 시범운영 평일, 10~17시 자유관람 및 프로그램 운영 ※ 한서주차장 리모델링 공사(체육진흥과), 스마트팜 공사(경제진흥과)
3	동주민센터 옥상 스마트팜	-	47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및 형태: 동별 현장 여건에 따라 조성 예정 • 시설: 1개층, 가설건축물 1동 • 작물: 엽채류 • 운영: 동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 조성 및 운영

○ 사 업 비: 1,531,000천원

- 특교세 200,000천원(망원1-2) / 특교금 477,000천원(동 옥상) / 구 854,000천원(한서 400,000 / 망원1-2, 동 옥상 공통 454,000)